

법제처 심사 전

「농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

2023. 11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 지 과)

1. 개정이유

- 가.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출입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이 개정(법률 제19639호, 2023. 8. 16. 공포)됨에 따라 농지조사 시 조사 거부,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- 나. 또한 그 밖에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,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농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
(안 별표 5 개정)
- 나.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 정비
 - 1)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중 징역형 집행이 면제된 자의 규정 명확화(안 제19조제1항제3호, 개정)
 - 2) 시·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변경·해제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 자료 제공 의무 부여(안 제28조제4항 개정)
 - 3)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 명확화(안 제44조제1항 개정)
 - 4)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를 뜻하는 ‘납입의무자’를 ‘납부 의무자’로 변경(안 제49조제1항 개정)

3. 주요토의과제 : 해당 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 : 붙임(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

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3호 중 “징역형”을 “징역형의 실형”으로, “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”를 “집행이 면제된 날부터”로 한다.

제28조제4항 중 “보고”를 “보고하고,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변경·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, 「토지보상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 등 관련 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”로 한다.

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의 시설”을 “각 호의 시설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로 한다.

제49조제1항 중 ““납입의무자””를 ““납부의무자””로 한다.

별표 2 제3호쿠목11) 단서 중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3조제2항”을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3조제4항”으로, “2022년 8월 2일”을 “2027년 8월 2일”로 한다.

별표 5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경우	법 제64조 제1항제1호	250	350	500
나.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	법 제64조	250	350	500

짓으로 한 경우	제1항제2호			
다.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 제2항	100	200	300
라.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,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	법 제64조제2항제2호	100	200	300
마.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	법 제64조제2항제3호	100	200	300
바.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	법 제64조제2항제4호	100	200	300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35, 1736